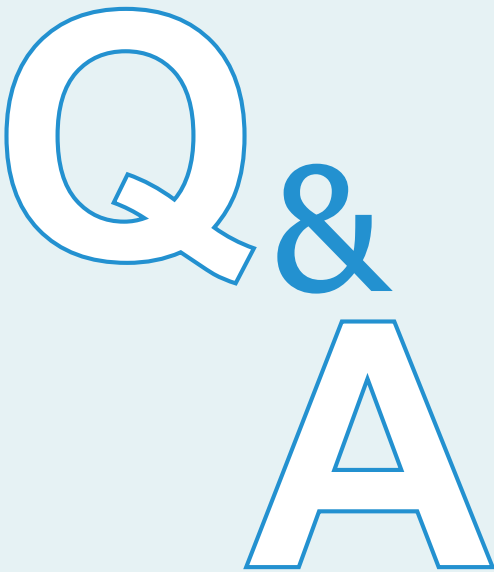


궁금합니다



Question | 소방법상 감지기(차동식 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 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5m 이상이라는 공기유입구(디프셔 등)의 중심에서 감지기 중심까지의 거리인지 최단거리(외경에서 외경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요즘 천장형(시스템) 에어컨으로 인테리어를 많이 설치하고 있어 바람의 세기가 디프셔 보다 강한데 감지기 이격거리는 현행대로 1.5m 이상 이격시키면 되는지, 또한 감지기 연동으로 거실제연의 급배기를 할 경우 천장형 에어컨도 연동 정지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 특별히 단서조항을 두지 않는다면 설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간격'의 의미는 중심간의 거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1.5m 이상이라는 거리는 공기 유입구(디프셔 등)의 중심에서 감지기 중심까지의 거리입니다. 법규에서 현장고려사항까지 정할 수는 없으므로 실무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은 현장여건에 맞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1.5m 이상만 이격시켜도 문제될 것은 없지만 감지성능을 고려해서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는 것이 기술자적 판단일 것입니다.

에어컨 바람은 외부로부터의 급기가 아니라 내부공기 순환이므로 제연설비의 급배기 개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연설비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정지시키는 것이 좋는데, 연동정지 기능은 에어컨에서 갖추어야 할 기능이 아니며 공급되는 전력선에 연동되는 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 지상의 13단짜리 주차타워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적용되었는데 설계도면에 높이 2m마다 설치하도록 표기되었습니. 국제화재기준에는 높이 6m마다 설치하라고 되어있는데 6m마다 설치해도 되는지, 주차 단수마다 헤드를 설치해야 되는지, 설계 도면대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20대 이상 주차)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물분무소화설비

본 코너는 방화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한 답변은 관련 법률에 의한 공식적인 판단이 아니며,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소관부처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화재안전기준 제10조(물분무헤드) 제1항에서 '물분무헤드는 표준방사량으로 당해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하는데 필요한 수를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헤드배치는 간격을 항상 일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방수량을 고려한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므로, 설치현장에 따라 설계시 소화효과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 다중이용업소의 천장 내부에 각재(반자)를 설치하기 위한 기초)를 사용한 목재와 합판을 방염처리해야 하는지,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천장부분에 스프링클러설비헤드를 설치한 경우 헤드와 헤드간의 수평거리와 천정의 공간이 얼마 이상일 때 천정상부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 다중이용업소의 천장 내부에 사용되는 각재의 경우는 방염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합판의 경우는 방염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스프링클러헤드의 수평거리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0조 제3항에 따라 내화구조의 경우 2.3m이하, 비내화구조의 경우 2.1m이하로 설치해야 하며, 천장과 반자사이의 공간의 폭이 1.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 설치 제외 장소(화재안전기준 제15조)인 경우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 옥상주차장의 출입구가 인접도로면과 동일높이에 접해 있어 바로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한 구조인 경우,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물분무등소화설비는 건축물 내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4 참조)

